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박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심사관의 자격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8. ~ 8.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기본자격의 기본경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또는 전문대학(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으로,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제2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가목 중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학”으로,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자로서”를 “자로서 3급 향해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하고”를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해당하는”을 “해당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3) 중 “취득하고”를 각각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로서”를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취득하고”를 “취득한 자로서 2급향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졸

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자로서”를 “자로서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해당하는”을 “해당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취득하고”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로서”를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취득하고”를 “취득한 자로서 2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졸업하고”를 각각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및 3) 중 “취득하고”를 각각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졸업하고”를 각각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취득하고”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졸업한”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졸업한”을 각각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제3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
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산적액체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으로, “졸
업한 사람”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포장위험물
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졸업한 사람으로서”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3조(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이 있을 것</p> <p>가. 대학의 조선·항해·기계·기관·용접·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이하 이 조에서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고 컨테이너의 제조, 검사, 시험 또는 수리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p> <p>나. 대학의 관련학과 외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p>	<p>제63조(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 요건)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p> <p>나. -----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p>

<신 설>

다. 공업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급 항해사의 해기사면허를 취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

라. -----
----- 졸업한 후 -----

마. ----- 라목 -----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1. -----

가. 대학 -----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
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
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 나.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
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하고 2급항해사(한정
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
업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생략)
-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준의 학력을 갖춘 후 ----
---- 자로서 3급 항해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

--

- 나.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
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다. -----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 (1) (현행과 같음)
- (2) -----

----- 취득한 후 --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조선산업기사
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6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서 2급항해사 이상의 해기
사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관검사관

가. 대학의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급기관사의 해
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를 취득한 자

(3) -----

----- 취득한 후

라. ----- 후 또
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 취득한 자로서
2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

2. -----

가.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을 갖춘 후 ----- 자로서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

나. -----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의 학력을 갖춘 후 -----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생략)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 ⑥ (생략)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다. -----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 해당하게 된 --

- (1) (현행과 같음)
- (2) -----

----- 취득한 후

라.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 취득한 자로서 2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같다.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수산계·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
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수산
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
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
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의 대행 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생략)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1) (생략)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별표 5에 따른 조

-----.

1. -----

가. -----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

나. -----
----- 졸
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다. -----

----- 졸업한 후 또는 법
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의 학력을 갖춘 후 -----

라. (현행과 같음)

마. -----

- 1) (현행과 같음)
- 2) -----

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취득한
후 -----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

----- 취득
----- 득한 후 -----

2. 기관(機關)검사원

2. -----

가. 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나. 전문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다. -----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라. (생략)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생략)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2년 이상
-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4년 이상

라. (현행과 같음)

마. -----

- 1) (현행과 같음)
- 2) -----

----- 취
득한 후 -----

3. -----

가.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 1) -----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 2) -----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급속,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② ~ ⑦ (생략)

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나.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

② ~ ⑦ (현행과 같음)